#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 관련 Q&A

# Ⅱ 공통(전체)

# Q - 1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플랫폼 구축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요?

A-1) 디지털 업무서비스 필요성 증가, 청구서류 간소화, 환자편의 제공, 행정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.

# Q - 2 진료받은 사람은 처방전등록번호를 어떤 경로로 받게 되나요?

- A-1) 요양비 종별 처방전을 요양기관(약국 제외)에서 '요양기관정보마당'을 통해 처방정보 등록(전송) 시 진료받은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로 처방전등록번호를 알림톡(SMS 등)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.
  - '요양기관정보마당' 인터넷홈페이지 주소: https://medicare.nhis.or.kr

# Q-3 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헬프데스크 운영기간 및 연락처는 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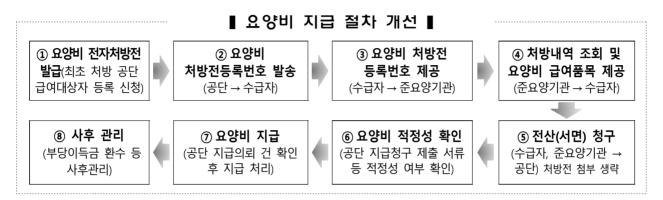
- A-1)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오류 등 시스템 업무지원을 위해 2022.4.30.까지 헬프데스크를 별도로 운영합니다. 운영기간 이후 기능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본부 급여관리실 요양비 업무부서에서 접수 예정입니다.
  - 전자처방전 연계시스템 헬프데스크 및 본부 업무담당부서 연락처
  - 시스템 결함 및 보완: 033-736-2138~2139
  - 시스템 기능개선: 033-736-3318~3319
  - 요양비 업무부서: 033-736-3360~3363, 033-736-3315~3318, 033-736-3350~3353

# Q - 4 🗆 요양비 처방전 발급부터 요양비 지급청구까지 진행 절차는?

#### A-1) 지급절차

- (요양기관) OCS시스템\* 또는「요양기관정보마당」에 등록된 요양비 처방서식에 요양비 품목별로 필수 처방내역(처방기간, 급여품목 등) 입력, 공단에 실시간 전송
  - \* OCS(Ordering Communication System): 의료기관 처방전 발급 · 전달 시스템
- (공단) 수급자에게 처방내역 조회 가능한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등록된 휴대전화(모바일) 번호로 SMS 전송

- (수급자) 모바일(The건강보험) 및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비 처방내역 확인 및 공 단으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를 구입(임대)업소에 전달
- (준요양기관) 준요양기관은「요양기관정보마당」접속하여 수급자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요양비 급여품목 제공·청구
- (공단) 업무시스템에서 준요양기관의 급여비 적정청구 여부 심사·지급 등 사후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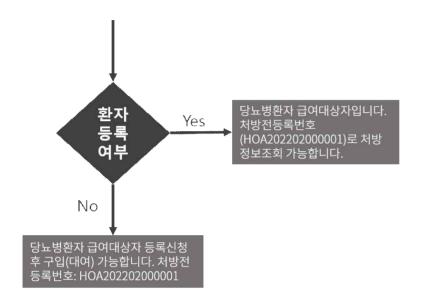


요양비 전자 처방전 발급 프로세스	요양비 전자처방전 연계 내용
요양기관	• OCS 또는 「급여보장포털(요양기관정보마당)」에 등록된 요양비 처방서식에 필수 처방내역(처방기간, 급여품목 등) 입력 후 공단에 전송 • 등록 완료 시 처방전등록번호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알림톡 등 문자 전송
준요양기관	• 「급여보장포털(요양기관정보마당)」에 접속하여 수급자로부터 전송받은 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급여품목을 제공하고 수급자로부터 요양비 지급청구 위임을 받은 경우 전산청구(제품제공내역 등록 등)
수급자	•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처방내역 확인, 처방전 등록번호를 준요양기관에 제공하여 요양비 급여품목 구입 및 사용, 홈페이지를 통해 요양비 전산청구 •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지급청구를 위임한 경우 요양비를 청구 시 등록한 제품제공내역을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(The건강보험 앱)로 조회
공단	• 수급자에게 처방내역 조회 가능한 처방전 등록번호 알림톡 등으로 전송, 「급여보장포털(요양기관정보마당)」로부터 연계된 처방내역과 제품제공내역을 업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요양비 청구 적정성 심사 후 지급



#### 0 - 5 │ 처방전등록번호 알림톡 등 문자 수신 내용은?

- A-1) 급여대상자 등록 여부에 따라 문자수신 내용 다릅니다.
  - 공단에서 처방전등록번호를 알림톡 등으로 문자 전송 시 요양비 급여대상자 등록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문자 전송됩니다.(전송문자 예시: 아래 순서도 참조)



#### 

A-1) 요양비 지급청구(서면·전산)서를 공단에 접수 시 전자처방전이 발급된 환자에 대해 의사의 종이처방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서면청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(전자처방전등록번호란 신설, 2023.1. 개정 예정)전까지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우측 상단에 처방전등록번호를 수기 기록해서 전자처방전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# ② 요양기관

# Q - 1 🛮 요양비 처방전 등록 및 조회 방법은?

A-1) 요양비 처방전을 발행하는 요양기관(약국 제외)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요양비 메뉴를 통해서 처방정보를 등록·인쇄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공단 제공 OCS 연계화면(MediConn 연계모듈 활용)을 이용하면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한 요양비 처방 내역을 전달 받을 수도 있습니다. 단, 프로그램 연계 시해당 OCS 관리업체 또는 전산 담당부서에서 요양비 처방전 등록 메뉴 등 연계 화면 개발 필요하며 연계 가이드 및 샘플은 공단에서 제공합니다.[요양

기관정보마당 좌측 상단 **™** OCS개발자지원 사이트 접속]

- 경로: 요양기관정보마당 > 요양비 > 요양비처방내역 > 요양비처방내역등록, 요양비처방내역목록조회
  - ※ 공단 OCS연계 지원관련 문의사항은 033-736-2363(정회종 선임)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# Q - 2

# OCS 미운영 또는 OCS 버전에 따라 공단과 상호연계가 안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 등록 자료 확인 및 관리는?

- A-1) OCS 미운영 또는 OCS 버전에 따라 공단과 병·의원간 상호연계가 안되는 요양기관은 공단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한 처방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요양비처방내역목록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  - 경로: 요양기관정보마당 > 요양비 > 요양비처방내역 > 요양비처방내역 목록조회

#### Q - 3

#### 요양비 급여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

- A-1) 요양비 종류별 급여대상자 등록 여부 확인은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요양비하위메뉴 중 '요양비급여대상자'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- 경로: 요양기관정보마당 > 요양비 > 요양비급여대상자 > 요양비 종류별 대상자조회(예시: 자가도뇨대상자조회)

또한, 요양비 하위메뉴 중 '요양비처방내역등록' 화면에서 처방전 종류, 주민 등록번호, 성명 입력 시 급여대상자 등록여부(등록일자 또는 급여대상자 미등록)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. 단, 임신성 당뇨병환자는 급여대상자등록 신청 불필요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.

#### 0 - 4

# 요양비 처방전 발급을 현행처럼 종이로 발급이 가능한지?

A-1) 전자처방전 발급 뿐만 아니라 종이처방전 발급도 가능합니다.

# 0 - 5

# 요양비 전자처방전의 처방정보 복사 및 수정 기능이 있는지?

A-1) 요양비 전자처방전 등록 시 해당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기 전자처방 등록(전송)한 환자의 직전 처방내역을 불러와 재처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. '요양비처방내역목록조회'에서 환자의 처방내역을 조회하여 '처방전 복사' 및 '처방전 수정' 버튼을 활용하여 재처방하거나, 기 처방정보를 수정해서 등록(전송)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재처방하거나

처방정보를 수정 후 등록(전송) 시 전자처방전등록번호는 매번 다시 부여됩 니다.

#### ■ 처방전 복사

- 직전 처방내역 불러오기와 유사한 기능으로 기 처방정보와 동일한 내역을 재처방할 경우 활용 (처방전 발행일은 신규등록 발행일)
- 처방전 수정
- 기 처방전 발행 처방정보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사용(처방전 발행일은 기 처방전 발행일)

#### ③ **준요양기관**

# Q - 1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 시 필수항목은?

- A-1) 수급자가 처방전 등록(발행)일자,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, 성명), 요양비 종별, 처방전등록번호를 제공할 경우 처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급여품목을 제공한 후 처방전 '사용' 버튼 클릭하여 사용으로 등록 처리되어야 요양비청구등록이 가능합니다.
  - 경로: 요양기관정보마당 > 요양비 > 요양비처방내역 > 요양비처방내역조회

# Q - 2 환자의 위임 없이 준요양기관에서 처방정보 조회가 가능한가요?

A-2) 수급자가 처방전 등록(발행)일자,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(주민등록번호, 성명), 요양비 종별, 처방전등록번호를 제공할 경우 <u>위임 없이</u> 처방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# Q - 3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약국 등 준양기관에서 요양비 지급청구(직접 한국 3 상태) 시 전자처방전이 발급된 수급자도 의사의 처방전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?

A-1) 요양비 지급청구(서면·전산)서를 공단에 접수 시 전자처방전이 발급된 수급자는 공단에 의사의 종이처방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다만, 서면청구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(전자처방전등록번호란 신설, 2023.1. 개정 예정)전까지는 요양비지급청구서 우측 상단에 처방전등록번호를 수기 기록 하여 전자처방전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0 - 4 🗆 요양비 전산청구 시 요양비 전자 처방정보가 연계가 되는지?

- A-1) 수급자에게 위임 받은 준요양기관의 경우 요양비청구등록 시 처방전등록 번호를 이용하거나 검색 기능을 통해 처방전 발행이력이 확인되는 팝업창 목록에서 처방정보를 선택하면 연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'요양비 처방 내역 조회화면'에서 '사용' 처리된 처방전만 요양비 청구등록이 가능합니다.
  - 경로: 요양기관정보마당 > 요양비 > 요양비청구 > 요양비청구등록

# Q - 5 처방정보 연계 시 대여기기의 경우 처방전 외 첨부자료인 사용기록지, 검사결과지, 의사소견서 등 자료도 연계가 되는지?

A-1) 전자처방전 등록 시 사용기록지 등 첨부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내 구축은 되어있으나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종이 서류를 제출한 경우 현행 처럼 요양비 청구등록 시 '제출서류첨부'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업로드 해서 공단에 접수(최종제출)하여야 합니다.

# 4 수급자

# Q-1 요양비 전산청구 시 요양비 전자 처방정보가 연계가 되는지?

- A-1) 요양비청구등록 시 처방전등록번호를 이용하거나 검색 기능을 통해 처방 전 발행이력이 확인되는 팝업창 목록에서 처방정보를 불러오기해서 처방 정보를 연계하여 요양비 청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
  - 경로: 공단홈페이지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요양비청구 > 요양비청구등록 바로가기
    - ※ 공단홈페이지 주소: http://www.nhis.or.kr

# Q - 2 요양비 처방내역 조회 및 조회이력, 업소기본정보 조회 방법은?

- A-1)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(The건강보험 앱)을 통해서 요양비 처방내역 및 조회이력, 업소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  - 공단홈페이지(http://www.nhis.or.kr)
    - 경로: 상단메뉴 > 민원여기요 > 개인민원 > 보험급여 > 요양비 처방전 조회 > '요양비 처방내역 조회'
  - The건강보험 앱
    - 경로: 전체메뉴 > 민원여기요 > 조회 > '요양비 처방내역 조회', '요양비 처방내역 조회 이력'
    - ※ 조회결과 내 '기본정보' 버튼 클릭 시 업소기본정보 확인 가능